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61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3. 31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안산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족의 지원을 위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민간협약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
-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많은 국가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인 공동체 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도시를 만들고 문화적 다양성을 자원화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안산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족에 대한 교육·문화·체육·고충처리 등 지원을 위한 **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간협약체** 운영근거 및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4조, 제14조의2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)
- 외국인 주민의 의견수렴과 공동체 모임 활성화를 위한 **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** 운영근거 및 구성 운영안 마련 (안 제21조, 제21조의2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, 제25조, 제26조)

□ 제정(개정)조례안 : 불임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불임(비용추계서 참조)

□ 사전예고(결과) : 불임(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참조)

- 입법예고 : 2015. 2. 28. ~ 2015. 3. 9.(1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현행조례
- 방침결정문 [2015.2.27]
- 방침결정문 [2015.1.17]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 중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여 제6장으로 하며, 제4장(제14조부터 제20조까지) 및 제5장(제21조부터 제26조까지)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

제14조(민관협의체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“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” (이하 “민관협의체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민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민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민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
2. 교수, 시의원, 상공인 등 외국인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
3. 외국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및 외국인주민

⑤ 민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관련 직위로 인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
⑥ 민관협의체는 그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⑦ 민관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14조의2(민관협의체의 존속기한) 민관협의체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.

제15조 (기능)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제16조 (운영)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민관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기회 : 연 4회

2. 임시회 :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③ 민관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민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협의·조정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협의·조정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2. 그 밖에 협의·조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민관협의체가 협의·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협의·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민관협의체에 그 위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민관협의체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18조 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

3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 참석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

제19조(의견의 수렴 등) 민관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0조(수당 및 여비)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
제5장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

제21조(대표자협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“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(이하 “대표자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대표자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대표자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대표자협의회는 국적별로 대표성을 가진 외국인 주민 중에서 성별,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
⑤ 대표자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
제21조의2(대표자협의회 존속기한) 대표자협의회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.

제22조 (기능) 대표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

1. 외국인 주민 관련 각종 시책 협의
2. 다문화 축제 공동기획 및 주관
3. 수렴된 외국인들의 의견 전달
4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3조 (운영) ① 위원장은 대표자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대표자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기회 : 월 1회
2. 임시회 :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③ 대표자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대표자협의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해서는 제17조를 준용한다.

제25조 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
3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 참석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

제26조 (수당 및 여비) 대표자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등

제27조(시책사업 추진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,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8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·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
④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3.8.2.>

제29조(지원단체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0조(세계인의 날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“안산시 세계인의 날”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기념식 및 문화·예술·체육행사
2. 학술행사 및 국제교류행사
3. 명예시민증 수여, 유공자·단체(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) 격려
4.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민간단체가 행사를 대행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1조(포상)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, 법인,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32조(표창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.

1.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경우
2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

② 표창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
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33조(명예시민)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.

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, 명예시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3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민관협의체 및 대표자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까지로 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대표자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까지로 한다.

소관 실·과		외국인주민센터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 명 현
	팀 장 직위·성명	외국인정책계장 목 영 현
	담당자 성명·전화	장 은 석 (481-3733)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권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장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협의체
<신 설>	<p>제14조(민관협의체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“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협의체” (이하 “민관협의체” 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민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민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</p> <p>④ 민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2. 교수, 시의원, 상공인 등 외국인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. 외국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및 외국인주민 <p>⑤ 민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관련 직위로 인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⑥ 민관협의체는 그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⑦ 민관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</p>
<신 설>	제14조의2(민관협의체의 존속기한) 민관협의체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.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제15조 (기능)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 2.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3.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<p><신설></p>	<p>제16조 (운영)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 민관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기회 : 연 4회 2. 임시회 :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<p><신설></p>	<p>제1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민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협의·조정에서 제척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이 해당 협의·조정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. 그 밖에 협의·조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<p>② 민관협의체가 협의·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협의·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민관협의체에 그 위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민관협의체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제18조 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 참석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
<p><신설></p>	<p>제19조(의견의 수렴 등) 민간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20조(수당 및 여비) 민간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</p>
<p><신설></p>	<p>제21조(대표자협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“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 (이하 “대표자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대표자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대표자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</p> <p>④ 대표자협의회는 국적별로 대표성을 가진 외국인 주민 중에서 성별,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⑤ 대표자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 중 사임 등으로 위원의 결위가 발생하여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제21조의2(대표자협의회회의 존속기한) 대표자협의회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.
<u><신설></u>	제22조 (기능) 대표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 1. 외국인 주민 관련 각종 시책 협의 2. 다문화 축제 공동기획 및 주관 3. 수립된 외국인들의 의견 전달 4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u><신설></u>	제23조 (운영) ① 위원장은 대표자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 대표자협의회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정기회 : 월 1회 2. 임시회 :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대표자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<u><신설></u>	제2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대표자협의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해서는 제17조를 준용한다.
<u><신설></u>	제25조 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 참석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
<u><신설></u>	제26조 (수당 및 여비) 대표자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현행	개정안
제4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등	제6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등
<u>제14조</u> (생략)	삭제
<u>제15조</u> (생략)	<u>제27조</u> (현행 제15조와 같음)
<u>제16조</u> (생략)	<u>제28조</u> (현행 제16조와 같음)
<u>제17조</u> (생략)	<u>제29조</u> (현행 제17조와 같음)
<u>제18조</u> (생략)	<u>제30조</u> (현행 제18조와 같음)
<u>제19조</u> (생략)	<u>제31조</u> (현행 제19조와 같음)
<u>제20조</u> (생략)	<u>제32조</u> (현행 제20조와 같음)
<u>제21조</u> (생략)	<u>제33조</u> (현행 제21조와 같음)
<u>제22조</u> (생략)	<u>제34조</u> (현행 제22조와 같음)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61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. 4. 16.

제안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'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'를 우리 시 공식 자문기관화 하는 것이 시기상조라 판단하여, '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' 관련 규정 모두를 삭제함.
- 민관협의체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, 민관협의체의 공익적·효율적 사무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, 충실한 회의기록과 회의의 공개원칙을 규정함.
- 지나치게 제한된 업무의 위탁대상 자격을 완화하고 「공직선거법」의 저촉을 예방하고자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표창으로 수정함.
- 일반적인 입법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.

□ 주요골자

- 민관협의체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, 업무 담당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.(안 제14조제4항의 각 호)
- 민관협의체 회의의 충실한 기록과 공개원칙을 규정함.
(안 제16조제4항 신설)
- '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' 구성·운영 등의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함.
(원안 제5장 및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삭제)
- 업무의 위탁대상 자격을 '지원단체(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)'에서 '비영리법인 또는 단체'로 수정함.(안 제22조제1항, 제3항)
-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유공자에 대해 시장이 '포상할 수 있다'를 '표창할 수 있다'로 수정함.
(원안 제31조 삭제, 안 제25조제1항 신설)
- 일반적인 입법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.(안 제18조 제목 및 본문, 안 부칙 제2조)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안산시 소속 공무원
2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
3. 교수, 시의원, 상공인 등 외국인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
4. 지역의 주민 및 외국인주민 대표자

안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민관협의체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안 제18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수정한다.

안 제5장(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)을 삭제한다.

안 제6장(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)을 제5장(제21조부터 제27조까지)으로 한다.

안 제27조를 제21조로 한다.

안 제28조를 제22조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원단체”를 “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”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원단체에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수정한다.

안 제29조 및 제30조를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.

안 제31조를 삭제한다.

안 제32조를 제25조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, 법인,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.

안 제33조 및 제34조를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잔여기간까지로” 를 “남은 기간으로” 로 수정하여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, 제2항은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신 설>	<p>제14조(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1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</p> <p>2. 교수, 시의원, 상공인 등 외국인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</p> <p>3. 외국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및 외국인주민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	<p>제14조(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안산시 소속 공무원</p> <p>2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</p> <p>3. 교수, 시의원, 상공인 등 외국인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</p> <p>4. 지역의 주민 및 외국인주민 대표자</p> <p>⑤ ~ ⑦ (개정안과 같음)</p>
<신 설>	<p>제16조 (운영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16조 (운영)</p> <p>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민관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</p>
<신 설>	<p>제18조 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18조 (위원의 위촉 해제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위촉 해제-----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
<신 설>	<p>제5장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</p>	<p><삭 제></p>
<신 설>	<p>제21조(대표자협의회 설치 및 구성) (생략)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신 설>	제21조의2(대표자협의회 의 존속기한) (생략)	<삭 제>
<신 설>	제22조(기능) (생략)	<삭 제>
<신 설>	제23조(운영) (생략)	<삭 제>
<신 설>	제2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 회피) (생략)	<삭 제>
<신 설>	제25조(위원의 해촉) (생략)	<삭 제>
<신 설>	제26조(수당 및 여비) (생략)	<삭 제>
제4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등 제15조 (생략)	제6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등 제27조 (현행과 같음)	제5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등 제21조 (개정안 제27조와 같음)
제16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 ④ (생략)	제28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	제22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비영리법인 또는 단체----- -----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-----제1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④ (개정안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제17조, 제18조</u> (생략)</p> <p><u>제19조(포상)</u>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, 법인,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</p> <p><u>제20조(표창)</u>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<u>제21조, 제22조</u>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9조, 제30조</u>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1조(포상)</u>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2조(표창)</u> <u><신 설></u>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3조, 제34조</u>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칙 제2조(민관협의체 및 대표자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</p> <p>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민관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까지로 한다.</p> <p>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대표자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까지로 한다.</p>	<p><u>제23조, 제24조</u> (개정안 제29조, 제30조와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25조(표창)</u></p> <p>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, 법인,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개정안 ①~③과 같음)</p> <p><u>제26조, 제27조</u> (개정안 제33조, 제34와 같음)</p> <p>부칙 제2조(민관협의체 및 대표자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남은 기간으로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